護照申告同意書

|  |
| --- |
| 本人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茲同意□自行向法務部申告。□委請駐韓國台北代表部將本人新辦護照影本等資料**轉致漢城華僑協會，**由該協會代辦申告。本人瞭解無論上述何種方式申告後，應由本人在2週內**親向韓國法****務部** (電話：1345)**確認**申告是否完成。具結人 (簽章) 年 月 日受委任人 (簽章)**注意:除無法簽名者外，不論是否親自申請，申請人均應於「具結人」處親簽，以茲聲明以上所填(附)資料確實無訛，如有不實，願負法律責任。** |

依據韓國出入國管理法第35條規定，依據本法第31條登錄之外籍人士倘有以下變更事項之一者，須於14日內向住居所在地出國管理事務所完成申告。

Ⅰ姓名、性別、生年月日及國籍。

Ⅱ護照號碼、核發日期及有效日期。

Ⅲ法務部命令所規定之前述以外之事項。

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해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

2. 여권의 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